

◆머느리권씨 열전 24-4

이귀(李貴 연안 이씨)의 어머니 증 정경부인 권씨 (시중공파22세 권용의 딸)

권씨부인의 일생

권씨부인은 명문가인 안동권씨 시중공(侍中公) 문중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품격 있는 규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익혔다. 그녀의 집안은 학문과 충절을 중시하는 가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녀 역시 높은 교양과 덕성을 함양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문의 전통과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후에 연안이씨 가문과 혼인하였다. 이 혼인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조선 시대 명문가 간의 사회적·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안동권씨와 연안이씨 두 가문은 모두 유서 깊은 집안이었으며, 그녀의 혼인은 두 가문의 전통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녀의 삶은 이후 조선 시대 여성들의 규범적 모델이 되었다.



관곡지, 권씨부인의 할아버지 권만형이 장인 강희맹으로부터 받은 곳, 조선초는 양성평등의 시대. 권만형의 12세손 권용정 이 군수 재직시 확대하고, 이후 시흥의 명소로 되다.

혼인 후 그녀는 부덕(婦德)을 갖춘 여성으로서 가정을 꾸려 나갔다. 조선 시대 여성으로서 그녀는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문을 운영하며,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했다. 그녀는 단순히 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안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규방 생활이 아닌, 가문의 정신적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려운 시기에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이를 위해 닦바

느질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지켰다. 특히 조선 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도덕과 예절뿐만 아니라, 학문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쳤다.

그녀는 ‘삼천지교(三遷之敎)’의 정신을 실천하며 자녀 교육 환경을 최적화했다. 이는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를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녀 역시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할머니의 밤상머리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윤리와 생활 규범을 강조했으며,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과 조화를 이루어 가정 내에서 교육을 실천했다.

그녀는 네 명의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냈다. 첫째 아들 이보(李寶)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금산 전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그의 충절은 후대에 기려졌으며,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은천사(隱泉祠)를 세워 그의 뜻을 기렸다.

둘째 아들 이경(李鏡)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시대적 격변 속에서 31세로 요절했다. 그의 부인 동복오씨는 친정 황해도로 이주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며 가문의 명맥을 이어갔다. 셋째 아들 이자(李自)는 벼슬길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학문과 덕을 쌓았다. 그는 세상의 부침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한 삶을 선택하며 가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넷째 아들 이귀(李貴)는 조선 시대 정치적 변혁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 그는 선조 말과 광해군 대를 거쳐 인조반정을 주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어려운 시기에도 옳은 선비 정신을 유지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고, 그의 이상은 후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권씨부인의 후손들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손자 이시달(李時達)은 익산 지역의 명문가와 혼인하여 가문의 명맥을 유지했다. 손자



화천군 권감이 청담동에 묘를 쓰니 그것이 엄청난 재원이 되었으나 지파의 소유라지만 권문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연원은 인가파(1930년대 족보에도 인가파로 나온다)라는 남인들의 비칭으로 그 어긋남 등을 메우는 일이 후손의 몫이다. 노론과 남인의 갈등은 내전으로 까지 치달는 현실이다. 그 연원은 깊고도 길다,

이시백(李時白)은 조선 후기 정치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국정을 운영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난국 속에서도 올바른 정책을 펼치며 조선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또 다른 손자 이시방(李時昉)은 조선의 조세 개혁을 이끈 대동법 시행에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정책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조선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시담(李時瞻)은 정치적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선택하며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는 가문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후손들에게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

권씨부인은 단순한 규방의 여성이 아니라, 가문의 중심을 지키고 후손들을 훌륭하게 길러낸 인물이었다. 그녀는 명문가 여성으로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 그녀의 교육 철학과 가문 운영 방식은 후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후손들은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삶은 여성군자의 전형적인 모델로 평가되며, 후대에 귀감이 되었다.(끝) 글 권오철기자

원주종친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제15대, 제16대 회장 이.취임식 거행

원주종친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제15대, 제16대 회장 이·취임식이 4월 19일 원주에딩타운에서 권영의 신임회장, 권순구 전임회장, 권혁우 강릉종친회장, 권혁윤 전 강릉종친회장, 권오열 전 평후공공회장, 권혁길 평후공 부회장, 권용준 횡성종친회 사무국장 등 8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용덕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정기총회와 제2부 회장 이·취임식 제3부 화합의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 정기총회는 역대회장 연혁, 권창구, 권영관 감사의 감사보고, 2024년도 결산보고, 2025년도 사업보고(하반기 권용 도원수 참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부 회장 이·취임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이임 회장에 대한 기념품 증정, 신임 임원 선임장 수여, 이임회장 인사, 신임회장 인사 종친회기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순구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재임하는 동안 서로의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선조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후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함께 해준 종친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권영의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종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보은하는 입장에서 봉사하는 책무를



맡은 것이 종친들께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라는 사명감에 감히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은 존경하는 종원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송조돈묵(崇祖敦睦) 조상을 섬기는 것과 정이 두텁고 화목한 정신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종원들의 의견을 모아 화목한 종친회, 종원을 잘 섬기는 안동권씨 원주종친회로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4년 후면 권기 1100년이 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권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안동권씨 원주종친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준비된 뷔페 저녁 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고 제3부 화합의 시간에는 초청가수의 사회로 장기자랑을 이어갔다.

만찬이 이루어지는 동안 권순구 전임회장의 섹소폰 연주, 권영의 신임회장의 노래에 이어 오신, 혁열 종친의 노래, 혁준, 혁찬 형제의 태권도 품새와 초청가수의 노래와 밴드의 연주로 흥겹게 이루어졌다.

권영의 회장은 끝인사에서 오늘 행사가 즐거웠기를 바라고 하반기 권용 도원수 참배에 많은 참석을 부탁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였다. 사무국장 권용덕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3장 뿌리에 대하여



1. 한민족(韓民族)의 얼

사람이 깨어 있을 때의 마음의 기억과 판단작용이 의식(意識)이다. 이에 반(反)하여 무의식(無意識)은 자각(自覺)이 없는 의식작용으로 오랜 기간의 의식들이 축적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前生)에서부터 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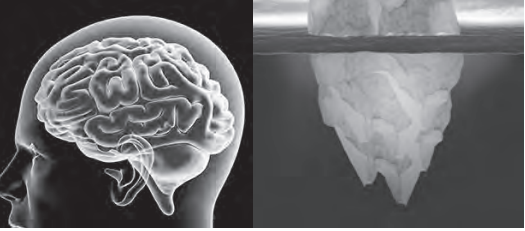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인 C.G. Jung(융)은 ‘의식(意識)’은 빙산(氷山)의 일각이고, 수면 아래의 거대한 빙산을 무의식(無意識)’이라고 비유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一致)하지 않고 대립될 때, 재난이나 질병 등의 다양한 사고(事故)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 민족의 의식 이야기를 해 보자.

우리는 고구려 이후 민족을 얼(의식)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외국의 침략과 약탈의 수모를 겪으면서 천수 백 년 동안 한(假)땃힌 삶을 살아왔고, 어쩌면 아직도 문화제국주의 폐해들을 다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니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때로는 우리민족

뇌를 알면 삶이 보인다!



혼 속에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고려 말 학자인 행촌(杏村) 이암(李巖) 선생께서는 “아! 원통하다. 부여는 부여의 도가 없어진 후에 한족(漢族)들이 쳐들어와 멸망했고, 고려는 고려의 도가 없어진 후에 몽고(蒙古)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단가!”라고 하셨다.

그렇다 민족의 도, 민족의 정신을 이르는 말인데, 이 민족정신의 뿌리가 흔들리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우리의 민족정신의 뿌리는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는가?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영수증(현금영수증)과 계약서등에 대한 세무상식 ①

1. 개요

1.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인은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기타 개인영수증 등 여러 종류의 영수증이 있다.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표 및 과세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상 영수증의 발행

소득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보다 좀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발행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 및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 현금영수증제도

가. 개요

현금영수증제도는 Bto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업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 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나.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

1) 가입의무대상자

가) 소비자대상업종 사업자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나)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다)의사·약사등 의료보건 용역제공 사업자
라)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마)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발행업종 사업자

2) 가입기한

가) 개인사업자

①소비자대상업종(의무발행업종제외)-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②의무발행업종-사업개시일,업종 정정일 등 요건해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법인사업자-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으며, 가입의무 대상자가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위반시 가산세

가)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

나) 특히,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위반시의 가산세

①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소비자상대상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 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는 20%를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을발급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가산세 및 발급의무 위반분은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현금영수증제도에 따른 기타 규정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의 부착의무가 있다.

②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1%~2.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특히 중요한 규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체보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5.영수증수취미제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거래건당 5만원 초과분을 수취한 경우)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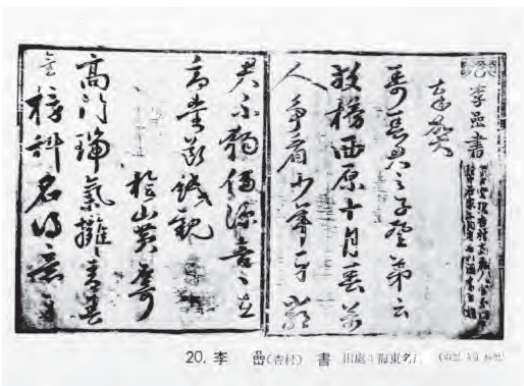
즉, 영수증수취명세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에 가산한다.

(다음호에 계속)



민족혼이 결여된 서구식 교육이 모두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뿌리가 흔들린 채로 흘러가는 이 나라의 현대의 아이들의 교육의 실상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만은 자타가 부인키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오토통재!

초등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써보라 하니 90%가 외국의 인물을 썼다. 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없었던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훌륭한 민족의 사표(師表)가 기라성(綺羅星)같이 많으셨건만 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고작 역사의 인물로 외워서 시험에 대비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